

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178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년 4월 7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정이유
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 2 및 「같은 법시행령」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, 필요시 지방공무원 과견요청 근거 마련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하여 구체적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
- 다.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등에 대한 백서 발간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의 2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
 - 1) 입법예고 : 2014. 2.10~ 3. 1(20일간), 의견 없음
 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 : 해당 없음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『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』 제50조의2 및 『같은 법 시행령』 제9조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 등)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존속기간은 서울특별시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날부터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까지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⑤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·부위원장·위원·직원이 될 수 없다.

제3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 등)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·비품·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·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,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,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백서발간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·직위, 예산사용내역,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